

**시험기관의 지정기준(제14조의7제1항 관련)**

구 분	기 준
1. 법인 및 단체	<p>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</p> <p>가. 「국가정보원법」 제3조제2항, 「보안업무규정」 제8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력을 보유할 것</p> <p>나.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일 것</p>
2. 기술인력	<p>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. 다만, 가목 또는 나목의 인력이 다목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</p> <p>가.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시험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: 2명 이상</p> <p>나. 항공보안장비 시험·평가 또는 관련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: 2명 이상</p> <p>다.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: 1명 이상</p>
3. 시설	<p>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험실을 갖추는 것</p> <p>가. 항온항습이 가능할 것</p> <p>나. 항공보안장비 시험평가를 위한 시험실을 보유할 것</p> <p>다. 화학물질 보관 및 취급을 위한 시설을 갖추는 것</p> <p>라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</p>
4. 장비	<p>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추는 것</p> <p>가. 엑스선검색장비 이미지품질평가용 시험용 장비(테스트 키트)를 보유할 것</p> <p>나. 엑스선검색장비 표면방사선량률 측정장비를 보유할 것</p> <p>다. 엑스선검색장비 연속동작시험용 시설을 보유할 것</p> <p>라. 엑스선검색장비 등 대형장비용 온도·습도시험실(장비)을 보유할 것</p> <p>마. 폭발물검색장비·액체폭발물검색장비·폭발물흔적탐지장비 시험용 유사폭발물 시료를 보유할 것</p> <p>바. 문형금속탐지장비·휴대용금속탐지장비·시험용 금속물질 시료를 보유할 것</p> <p>사.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및 시험용 낙하시험장비를 보유할 것</p>

아. 시험데이터 기록 및 저장 장비를 보유할 것

자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장비를 보유할 것